#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2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이해민·민병덕·조 국

차규근 • 서왕진 • 한민수

김준형 · 정춘생 · 김선민

황운하 • 권칠승 • 조승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고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

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 법률 제 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위원 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②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lt;단서 신설&gt;</u>	다만,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
	지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
	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
	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4
	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